

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

21-51-2

(의결, 공개)

---

# 최근 고용상황 및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

---

2021. 12. 30.

관 계 부 처 합 동



# 순 서

I. 코로나19 대응 정책 성과 .....	1
II. 최근 고용동향 및 2022년 전망 .....	2
III.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 .....	6
1.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.....	7
2. 취약부문 일자리 회복 지원 .....	9
3. 미래유망산업의 인재양성 강화 .....	14
4. 산업구조전환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추진 ....	16
5.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..	18
6. 고용안전망 확충에 발 맞춘 고용서비스 내실화 ..	21
IV. 고용정책 과제 이행 점검 및 보완 .....	23



## I. 코로나19 대응 정책 성과

### ◇ [일자리 영]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른 회복 + 민간일자리 중심 개선

- '20~'21년 간 고용유지 지원,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생계안정 지원, 공공·민간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대책에 일자리예산 72조원 투입
- \* 고용유지지원금('20~'21년(~11월) 88.2만명), 특고·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('20~'21년 179.2만명), 공공·민간일자리 창출('20년 158.5만개, '21년(~11월) 145.6만개)

⇒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빠른 고용회복 달성\*,  
비대면·디지털 관련 산업 등 민간 일자리 중심\*\*으로 고용 개선

- \* 코로나 이전('20.2월) 대비 '21.11월 고용회복률(% 계절조정 취업자수 기준): 캐나다(101.0), 한국(99.98), 독일(99.2, 10월), 이탈리아(99.2, 10월), 영국(98.3, 10월), 일본(98.2, 10월), 미국(97.8)
- \*\*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규모는 14만명 감소('20년 138.9만명 → '21년 124.6만명) 하였으나 '21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5만명 증가 전망

### ◇ [일자리 질] 상용직 비중 확대 +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

- 예술인, 특고,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1차 고용안전망 확충 추진+ 2차 고용안전망 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

⇒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비중의 확대, 고용보험 가입자 수 지속 증가

- \* 상용직 비중(% 각 연도 11월): ('16) 66.2 ('17) 67.2 ('18) 68.1 ('19) 69.5 ('20) 70.3 ('21) 71.3  
고용보험 가입자 수(만명): ('16) 1,266 ('17) 1,296 ('18) 1,343 ('19) 1,386 ('20) 1,411 ('21.11) 1,467
-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확립,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
- ⇒ 저임금 근로자 비중, 임금5분위배율 개선세, 근로시간 감소 등 성과
- \* 저임금근로자 비중(%): ('12)23.9 → ('16)23.5 → ('17)22.3 → ('18)19.0 → ('19)17.0 → ('20)16.0  
임금 5분위 배율(배): ('12)5.33 → ('16)5.24 → ('17)5.06 → ('18)4.67 → ('19) 4.50 → ('20)4.35  
연간근로시간(상용 5인 이상): ('12)2,092 → ('16)2,052 → ('17)2,014 → ('18)1,986 → ('19)1,978 → ('20)1,952

### ◇ [보완필요사항] 코로나 충격이 집중된 부문의 회복 지원 필요

- 도소매업·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, 고용원有 자영업자,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의 어려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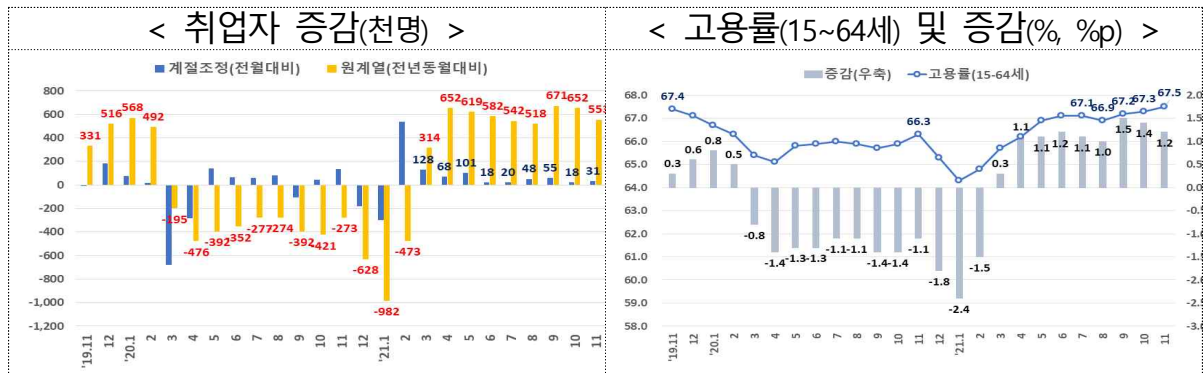
- \* 코로나 이전('20.2월) 대비 '21.11월 고용회복률(% 계절조정 취업자수 기준):  
(숙박음식) 90.1 (도소매) 93.5 ⇔ (보건복지) 110.7 (정보통신) 111.1 (전문과학) 106.6  
(고용원 있는 자영업자) 91.2 (일용노동자) 86.4 ⇔ (상용노동자) 103.4

## II. 최근 고용동향 및 2022년 고용시장 전망

### 1 최근 고용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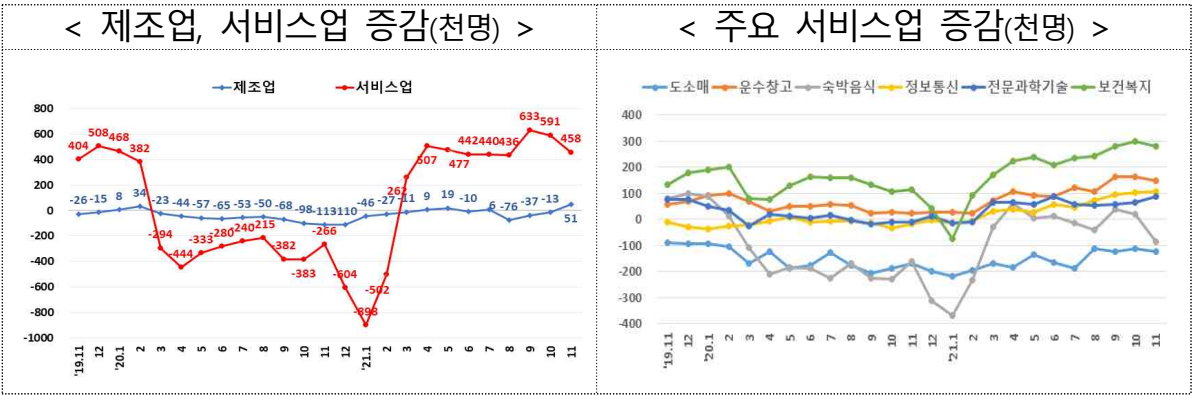
#### ◇ 취업자 증가, 고용률 상승 등 고용지표 개선 지속

- 9개월 연속 고용률(15~64세) 상승(67.5%, +1.2%p) 및 취업자수(15세 이상, 2,779.5만명, +55.3만명) 증가 등 고용지표 개선세 지속
  - \*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4)65.2 (5)61.9 (6)58.2 (7)54.2 (8)51.8 (9)67.1 (10)65.2 (11)55.3
  - \* 취업자수 8개월 연속 +50만 이상 증가, 15-64세 고용률 11월 기준 최대
-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10개월 연속 증가(10월→11월, +3.1만명) 하면서 위기 직전 수준('20.2월 대비 -0.5만명)에 근접하는 모습
  - \* 계절조정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1.5) 10.1 (6) 1.8 (7) 2.0 (8) 4.8 (9) 5.5 (10) 1.8 (11) 3.1



#### ◇ 비대면·디지털 관련 업종, 청년, 상용직 등이 고용 회복 주도

- (산업) 제조업 4개월 만에 증가 전환, 서비스업은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큰 폭 증가세 지속
  - 제조업은 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 전환
  -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와 함께 비대면·디지털 관련 전문과학기술, 정보통신, 운수창고 등에서 큰 폭 증가세 지속
- \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1.6)△1.0 (7)0.6 (8)△7.6 (9)△3.7 (10)△1.3 (11)5.1
- \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6) 44.2 (7) 44.0 (8)43.6 (9)63.3 (10)59.1 (11)45.8



- **(연령)** 청년 중심 고용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, 모든 연령대 고용률 4개월 연속 상승
  - 청년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+1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 지속, 30대·40대 취업자는 감소하였으나 인구를 고려한 고용률은 상승
  - \* 청년층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6) 20.9 (7) 18.4 (8) 14.3 (9) 21.9 (10) 18.0 (11) **16.8**
  - \* '21.8→9→10→11월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 : (청년)2.3 → 3.2 → 2.8 → **2.7**  
 (30대) 0.3 → 1.3 → 1.1 → **0.4** (40대) 0.9 → 0.8 → 0.9 → **0.2**  
 (50대) 0.9 → 1.4 → 1.4 → **1.6** (60세 이상) 0.7 → 0.3 → 0.6 → **0.4**
- **(종사상지위)** 상용직 증가, 일용직, 고용주 감소 지속
  - 상용직은 2개월 연속 +60만명 이상의 큰 폭 증가세 지속
  - 일용직 감소 지속, 고용주 감소는 지속되었으나 감소폭 둔화
  - \* '21.10→11월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 
 (상용직) 61.5 → **61.1** (임시직) 21.9 → **10.6** (일용직) △16.2 → △17.5  
 (고용有 자영업자)△2.6→△0.4 (고용無 자영업자) 4.5→ **4.2** (무급)△3.7→△2.7

◇ **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방역 관련 불확실성 지속**

- 경기 회복, 수출 호조 등으로 올해 취업자는 35만명 내외 증가 전망
  - 다만,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 관련 불확실성 상존
- ⇒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고용유지를 뒷받침하고,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·공공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지속 추진

### □ 2022년 취업자 수 증가 28만명, 실업률 3.6% 전망

- **(총괄)**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기인하여 서비스업이 부진에서 완만하게 회복하면서 '22년에도 취업자 증가세 지속 전망
  -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민간 투자개선은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회복요인으로 작용 가능
  - 다만, 오미크론 변이 등 방역상황의 불확실성도 상존

#### < '21~'22년 취업자 수 증감 및 실업률 전망 >

	취업자수 증감(전년비, 만명)							실업률(%)						
	'20	'21			'22 <sup>e</sup>			'20	'21			'22 <sup>e</sup>		
		상	하 <sup>e</sup>	연 <sup>e</sup>	상 <sup>e</sup>	하 <sup>e</sup>	연 <sup>e</sup>		상	하 <sup>e</sup>	연 <sup>e</sup>	상 <sup>e</sup>	하 <sup>e</sup>	연 <sup>e</sup>
정부			-	35	-	-	28			-	3.6	-	-	3.6
예정처			-	23	-	-	26			-	4.0	-	-	3.9
한은	-22	12	57	35	28	22	25	4.0	4.5	2.9	3.7	3.8	3.3	3.6
KDI			60	36	44	16	30			3.0	3.7	4.0	3.4	3.7
노동연			59	35	37	12	24			3.1	3.8	4.3	3.1	3.7

\* 전망 시점: (정부) 12월 (예정처) 9월 (한은) 11월 (KDI) 11월 (노동연) 12월

- **(산업)**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세 지속 전망
  -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, 복지·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등에 따라 관련 분야 일자리 지속 증가
  - 제조업의 경우 세계경제 회복으로 인한 수출 개선세와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는 상방요인이나 원자재 수급 불균형, 글로벌 물류 차질 등 하방요인 병존
- **(지위)** 상용직 일자리 중심의 개선세 지속 가능성
  - 신산업, 사회서비스 등 분야 노동수요의 견조한 증가에 따라 상용직 일자리 증가 추세는 '22년에도 지속되며 고용개선 견인할 것으로 전망



### 1 비대면 활동 확대

◆ 키오스크·무인점포 확대 등 자동화·무인화

- \* 지난 1년 간 국내 키오스크 출하대수는 59% 증가(20.상 8천대 → 21.상13천대),
- \* 21.7월 무인(하이브리드 포함)편의점 점포 수 1,000개 돌파(GS 480개, CU 250개, 이마트 180개 등)

◆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온라인 소비 증가

- \* 온라인소비 비중(%) : ('18) 18.6 → ('19) 21.4 → ('20.1월) 22.9 → ('21.1) 28.1

◆ 근무방식이 비대면 회의, 재택근무 등으로 유연근무 확산

- \* 원격·재택근무 활용자(천명, 통계청): ('17) 5.9 → ('18) 7.9 → ('19) 9.5 → ('20) 50.3

### 2 디지털 전환 가속화

산업	디지털화 사례
IT·SW	· 원격근무, 5G상용화, 사이버보안 중시, 게임이용 증가 등으로 SW수요 급증
금융	· 핀테크 성장(고용증가),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로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모집인 감소
유통	· 온라인쇼핑 거래액 '21.8월 15.8조원, 코로나이전('19.8월) 대비 38.1% 증가(통계청) · 셀프주유기, 자동차 온라인 판매 등 확대
물류	· 전자상거래 급성장으로 메가 허브터미널 구축, 풀필먼트 활성화
외식	· 무인점포, 서빙로봇, 주문용태블릿
제조	· 공장 생산라인 자동화, 디지털기술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확대
의료	· 모바일헬스케어, 원격의료, 보건의료분석(AI, 빅데이터) 등 디지털헬스케어 본격화
교육	· 비대면콘텐츠, 화상서비스, 인강전용 스마트학습기 출시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

### 3 그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
◆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시대 도래

- \* EU, 영국, 미국, 중국('60년), 일본 등 134개국 탄소중립 선언('21.7월기준)
- \*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,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(애플, 2030년까지 공급망 및 제품의 100% 탄소중립화 선언) 등 저탄소화가 부품·원료·생산 등 연관 업계에 전방위적 영향

### 4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위험 증가

◆ 신생아수 감소 +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→'20년 처음으로 인구 감소

- \* 합계출산율: ('18) 0.98 ('19) 0.92 ('20) 0.84 ⇨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

◆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,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

- \* 생산가능인구 비중(15~64세): ('12) 73.4% → ('21) 71.7% → ('30) 65.4% → ('50) 51.3%

### III.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

- ◇ 고용회복세를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지속·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·미래인재 양성에 집중
- ◇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, 고용안전망 확충과 노동전환 지원 강화 추진

\*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: ('21년) 30.1조원 → ('22년) 31.1조원(전년 대비 3.3% 증가)

<b>비 전</b>	<b>활력 있고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</b>	
<b>목 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코로나 상흔 치유, 완전한 일자리 회복</li> <li>·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미래 대응체계 구축</li> </ul>	
<b>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</b>	<b>취약부문 일자리 회복 지원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규제혁신·창업지원 등 투자 분위기 조성</li> <li>✓ 미래 유망 산업·일자리 집중 육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지역·산업 중심 고용회복 지원</li> <li>✓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및 고용유지 지원</li> <li>✓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</li> </ul>	
<b>미래유망산업의 인재양성</b>	<b>공정한 노동전환 추진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디지털·신기술 선도인재 양성</li> <li>✓ 재직자 디지털 역량 축적 지원</li> <li>✓ 인재양성 지원체계 개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사업재편·전환과 연계한 노동전환 추진</li> <li>✓ 효과적인 노동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</li> </ul>	
<b>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</b>	<b>고용서비스 확충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</li> <li>✓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</li> <li>✓ 취약한 고용형태 노동자 보호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구직자·기업 맞춤형 서비스 강화</li> <li>✓ 데이터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</li> <li>✓ 민간위탁기관 관리체계 구축</li> </ul>	

## ◇ 규제혁신·창업 지원 등 민간 투자 분위기 조성

## □ (규제혁신) ①규제시스템 개선 + ②현장맞춤형 규제혁신 병행

① 규제샌드박스 특례분야 추가<sup>1)</sup>, 실증결과 안전성 등 입증된 과제의 규제정비 신속 추진<sup>2)</sup>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 보완

\* 1) (現) 산업융합, 혁신금융, ICT융합, 규제자유특구, 스마트도시,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 
→ (改) 모빌리티, 바이오헬스 등 2개 분야 추가

2) 총 633건('21.12.30일 기준) 중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된 125건 정식 허용  
↳ (예) 공유주방('20.12, 식품위생법), 온라인 대출비교('21.3,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)

## ② 新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집중 정비하고, 작지만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애로도 적극 해소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 추진

## □ (벤처·창업 활성화) 민간 벤처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

○ (스톡옵션) 우수 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<sup>1)</sup> 및 과세특례제도<sup>2)</sup> 개선('22.1~)

\* 1) (現)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→ (改) 행사이익 기준 5천만원

2) (現) 시가 이상 발행분만 과세이연 가능 → 시가 이하 발행분도 과세이연 가능

○ (유망창업)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을 확대<sup>1)</sup>하고,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<sup>2)</sup>

\* 1) 비대면(300개), BIG3(350개), 그린뉴딜(100개) / ('21) 0.1 → ('22) 0.2조원

2) 관련 부담금 13개 면제 가능토록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등 개정 추진

## □ (투자프로젝트 추진) 기업·민자사업·공공기관 투자프로젝트 를 '21년 110조 → '22년 115.5조원 규모로 확대

## ○ (기업 : 33.0조원) 제도개선,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집행 애로사항 해소 통한 적기 착공 지원

## ○ (민자사업 : 15.5조원) 신규 발굴 11.0조 + 집행 4.5조원

## ○ (공공기관 : 67.0조원) 역대 최고수준 투자 + 상반기 526% 이상 집행 추진

## ◇ 미래유망 산업 · 일자리 집중 육성

- **(한국판 뉴딜 가속화)** 뉴딜 2.0 등 3년차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
  - '22년 대폭 확대된 뉴딜 마중물 재정투자\*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, 데이터, AI, 녹색산업 등 디지털·그린 新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
    - \* 뉴딜 재정투자(국비): '20년 5.4조원 → '21년 27.1조원 → '22년 33.1조원
    - '22년 분야별 투자계획(국비): (디지털) 9.0조원, (그린) 12.7조원, (휴먼) 11.4조원
  - 뉴딜 미래입법\*·제도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, 정책형 뉴딜펀드 활성화 (연내 4조원 조성 목표) 등으로 민간분야 뉴딜 확산 및 민간투자 확대 추진
    - \* 12대 입법과제, 43개 법률 중 28개 법률 입법 완료(데이터기본법, 탄소중립기본법 등)
- **(신산업 육성)** D.N.A.(Data·Network·AI), 메타버스 등 高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선점으로 새로운 일자리 분야 개척
  - 데이터댐(4.5만명<sup>1</sup>, '22년), 5G+ 융합프로젝트 등 디지털 뉴딜<sup>2</sup> 주요 사업 등을 통해 민간 혁신을 창출하고 디지털 일자리 확보 지원
    - \* 1) 데이터 댐 사업 중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'22년 참여인력 합산
    - 2) 디지털 뉴딜(국비): ('20~'21) 10.8조원, ('22) 9.0조원, ('20~'25) 49조원 수준
  -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초연결 신산업\* 육성 추진(뉴딜2.0) → 차세대 핵심기술·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
    - \* 범부처 '신산업 TF' 운영(팀장: 1차관, '21.4~)을 통해 메타버스·블록체인·클라우드·지능형로봇·디지털헬스케어 등 5대 분야 핵심과제 마련 추진
- **(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)** 他산업 대비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\*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
  - \* 취업유발계수(한은, '19, 명/10억): (서비스)12.5 (건설)10.8 (전산업)10.1 (제조(공산품))6.2
  - 기술혁신·인구변화 등에 대응하고, 청년들이 새로운 유망 일자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신직업 대책 추진\*
    - \* '14~'20년 5차례의 신직업 대책 등을 통해 69개의 정부육성 신직업 발굴
    - '21.12월 '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'을 통해 18개 신직업 발굴
    - 향후에도 신직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 조성\*
    - \* ①신직업 정보 관리·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, ②구직자·창업기업·대학 등에 인센티브 부여, ③갈등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도입 등
  -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, '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' 국회통과에 주력
    - \* 추진체계(서비스산업발전특위),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, 지원기관 지정 등 포함

## ◇ 지역·산업 중심의 고용회복 지속 지원

- **(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)** 여행·관광·공연·전시업 등의 업황 및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 검토('22.1/4분기)

\*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·직업훈련·노동자 대부 등 우대 지원

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(총 14개)	지정 기간
여행·관광숙박·관광운송·공연업	'20.3.16~'22.3.31
항공기 취급업, 면세점, 전시·국제회의업, 공항버스	'20.4.27~'22.3.31
영화업, 수련시설, 유원시설, 외국인전용 카지노, 항공기부품 제조업, 노선버스	'21.4.1~'22.3.31

- **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** ('21.12월 → '22.12월 종료)

\* ①조선업('16.7~), ②군산, 울산동구, 거제, 통영, 경남고성, 창원진해('18.4~), ④목포·영암('18.5~)

- **(상생형 일자리) 신규지역 발굴 지속 추진<sup>1)</sup> +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가 신청하는 '지역주도형 지원사업<sup>2)</sup>' 신설**

1) (現 5개 지역) 광주, 강원·밀양, 군산·부산

2) (現) 정부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지원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구성·제시 → (改) 지자체가 지원 필요한 항목을 선정·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

- **(지역일자리) 지역이 고용위기와 디지털·저탄소 전환에 대응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확대\***

\* ①'20년: 전북, 경남, 경북, 충북, 인천 ②'21년: 부산, 울산, 광주, 충남

③'22년: 1개 지역 추가 선정 예정

- **자치단체 주도의 조선업, 농촌 농번기 대응 일자리사업 추진('22~)**

\* (조선업) 신규인력 유입 및 장기근속을 위한 「취업촉진 자산형성 사업」 추진 (농촌 농번기) 도시 중장년·여성의 농촌 취업 알선, 교통편의·숙박비 등 맞춤형 지원

- **'지역 고용정책 개편방안」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 역량 강화, 거버넌스 기능 강화 등 추진('22.上~)**

\* ①지역 일자리상황 진단도구 개발·제공 ②지역 일자리 전략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패키지 제시 ③지역일자리사업 공시 기능 강화 및 평가시스템 개선 등

## ◇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기회 확대

- **(고용유지지원금)** 0.6조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그간 운영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병행(~'22.上)
- **(저임금노동자)**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**일자리 안정자금을 '22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지원**
  - \* 쏘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3만원, 6개월 지원('22년 0.5조원)
  -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\*에 대해 **'22.1~3월분 고용·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지원**
    - \* (고용) 30인 미만 사업장, (산재) 30인 미만 사업장 + 1인 자영업자 + 특고 사업장
- **(직접일자리)** 노인·장애인·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**직접일자리 105.6만개\***를 신속하게 제공('21년 대비 +4.9만개)
  - \* 노인일자리 84.5만개('21년 대비 +6만개), 자활근로 6.6만개 등
  - '21.12월 중 사업계획 확정, 운영기관 선정, 모집공고 등을 실시하여 **'22.1월 중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 채용 추진**
    - \* 조기 모집이 시급한 87만명 사업(7개부처 12개)에 대해 12.9일 1차 통합공고 실시
- **(고용장려금)**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는 경우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**고용촉진장려금 인원 확대**('21, 1.2만명→'22, 2.8만명)
- **(사회적기업)** 성장단계별 맞춤형 (예비)사회적기업 육성 체계 구축 및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
  - \* 고용인원(명): ('07) 2,539 → ('17) 41,917 → ('20) 55,407 → ('21.12) 61,877

## ◇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

### ①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촉진 및 지원강화

- **(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)**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년 간 최대 960만원 지원(14만명, 0.5조원)
  - \*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 일원화,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과 중소기업으로 한정

□ **(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)** 비용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까지 직무훈련·일경험 프로그램 확산('22.1월~)

○ 대학, 지역·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, 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고, '청년고용 응원 멤버십\*' 구축

\* 삼성전자, 포스코, SK하이닉스, 롯데, 삼양식품, KT, SK, 스타벅스, KT&G, 현대자동차 등 11개

<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신규 모델(안)>

<b>(모델1) 대학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</b> 대학교 재학생 대상, 방학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3개월 미만 단기 프로그램 운영	<b>(모델2) 기업-대학 디지털 인재양성</b> 지역 IT 비전공 청년 대상, 기초 직무교육(대학)과 일경험(기업) 등 지원
<b>(모델3) 가상회사를 통한 직무체험</b> 실제 기업 실무환경과 유사한 가상회사에서 프로젝트 기반 직무체험 제공	<b>(모델4) 非 IT 분야 직무훈련·일경험</b> 지역·산업별 인재 양성을 위해 대·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무교육, 일경험 등 제공

□ **(청년희망 ON)** 기업은 청년채용 확대 및 교육, 멘토링 등 제공 + 정부는 훈련비·수당 등 인프라 지원하는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

\* (성과) '21년 KT, 삼성 등 6개 기업 참여 → '24년까지 총 17.9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

□ **(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)** 청년과 지역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유형\*을 신설하는 등 개편·재추진(2.6만명)

\* 지역혁신형, 상생기반대응형, 지역포용형

□ **(청년 정책체감도 제고)** 취업준비생 애로경감방안('21.10) 차질 없이 추진

- AI면접 체험, 비대면 화상면접 지원, 비대면 화상면접센터 신설('22년 6개소)
- 공공 면접관(700여명)을 활용하여 모의면접 및 피드백 제공
- 현직자 즉문즉답 확대, 부처·산업별 채용박람회 정보 통합 제공 취업생 스터디 앱(열품타) 연계 등을 통해 취업정보 전달 효과성 제고
-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청년 구직자의 마음회복 + 취업연계 지속 추진

○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\*하고, 온라인 청년센터 중심 원스톱서비스 기능 구축\*\*

\* [대상]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까지 확대, [기능] 생활심리 등 전문상담 강화 등

\*\* 청년정책 신설·변동 실시간 파악 및 통합안내·신청접수, 카톡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등

□ **(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)** 청년 자산형성 정책 확대\*를 고려하여 혜택이 더욱 필요한 청년과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제도 개편\*\*

\* 청년특별대책('21.8월)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희망적금,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

\*\*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으로 가입대상 한정, 임금상한 月 300만원 등

## 2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재취업 지원 강화

- **(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강화)** 고령자 고용지원금\*을 신설(54억원, 6천명)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개편방안 마련(~'22)
  - \* 고용기간 1년 초과,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 30만원씩 2년간 사업주에 지원
- **(재취업지원 의무화제도 내실화)** 사업주가 이직 예정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 개선\*
  - \* 진로설계 교육·상담, 취·창업교육: 16→24시간 이상, 취업알선: 2→4회 이상
  - 업·직종별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추가 개발\*, 기업 대상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(450개소), 인사담당자 교육(7백명) 등 기업 지원 강화
  - \* 이직사유별(정년퇴직, 경영상사유), 직종별(사무직, 생산직) 구분에 따른 가이드북 제작
- **(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신설)** 민간 전문컨설팅 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심층 경력진단·설계 지원\*
  - \* 만 45세~54세 중소기업 재직자, 5,000명, 1인당 100만원 지원
- **(기본계획 수립)** 고령자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및 해외사례 검토 등을 바탕으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계획\* 수립 추진
  - \* · 점진적 퇴직과 다양한 인센티브, · 민간-공공의 고용서비스 확대, · 생애경력설계와 맞춤형 훈련, ·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· 경사노위 연구회 및 노사협의를 통해 고용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논의

## 3 일·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한 여성 고용촉진

- **(육아휴직 지원 강화)**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<sup>1)</sup>하고,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시 급여 확대<sup>2)</sup> +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강화<sup>3)</sup>
  - 1) 육아휴직기간 4~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% 지원(상한 월150만원)
  - 2) 자녀가 만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통상임금 100% 지급(상한 월 200~300만원)
  - 3) ('21) 최대 1년 간 월 30만원 지원 → ('22) 기존 지원의 특례로서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첫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
- **(재취업 지원)**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직업훈련<sup>1)</sup> 및 일경험지원 강화<sup>2)</sup>
  - 1) 폴리텍 여성재취업훈련 ('21)33→('22)48억원,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('21)32→('22)40억원
  - 2) 새일인턴운영 ('21년) 236억원 → ('22년) 259억원



- **(워킹맘 고용유지 지원)*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인원을 확대(+약 1천명)하고,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·보수('22년 83개소) 지원
  -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<sup>1)</sup> 유연근무 확산<sup>2)</sup> 지속 지원
    - 1) 30인 이상 사업장 → 쉼사업장
    - 2)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 간접노무비(1.1만명)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
- **(성차별 해소·성희롱 예방)**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A) 개선방안 마련,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제도('22.5월) 안착 등 추진
  - 조직문화 진단도구 개발·활용,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도록 법\* 개정 추진
    - \*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('21.11.11.) 환노위 계류 중

#### 4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·예산 지원 강화

- **(고용의무 강화)**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 3.4%에서 '22년~'23년 3.6%, '24년 이후 3.8%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
  - \*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: 現 3.4% → ('22~'23) 3.6% → ('24~) 3.8%
- **(신규고용 촉진)**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\*을 신설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장애인 신규고용 유인 제고
  - \*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(월 30~80만원)을 최대 1년간 지급(3년간 한시사업)
- **(표준사업장 지원 확대)**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규모 확대('21, 90개소 → '22, 120개소)
- **(고용유지 지원 확대)** 장애인 노동자가 안정적·지속적 직업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물량 확대\*
  - \* 근로지원인: ('21)0.8만명 → ('22)1만명, 보조공학기기: ('21)1.2만점 → ('22)1.3만점
- **(기본계획 수립)** 장애계, 전문가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('23~'27) 수립

## ◇ 디지털·신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

- **(범부처 협업 신기술 인재 양성)** 양성 분야·규모를 대폭 확대\*하고 고도화된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인력양성트랙 구축 등 사업 간 연계 강화\*\*
  - \* ('21) 6개 분야 30개 사업 11.3만명, 0.5조원 → ('22) 20개 분야 140개 사업 15.7만명, 1.6조원
  - \*\* (예시) 초급매치업 과정(교육부) → 중급하이테크 과정(고용부) → 고급이노베이션스퀘어(과기부) → 트랙 내 하위과정 이수자는 상위과정 참여 요건 완화 등 우대 제도 마련
- 각 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연계·제공하는 플랫폼(HRD-Net)을 통해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, 구인·구직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('22~)
- **(K-Digital Training 확대)** 디지털 선도기업, 민간 협·단체 등이 주도하는 SW 인재양성 모델 지원 확대('21년 1.7만명 → '22년 2.9만명)
- **(폴리텍 개편)** 기존 산업과 AI가 융합된 AI+x, 저탄소 분야 등 15개 학과를 신설·개편하고, 고학력 청년 실업자 대상 하이테크과정 확대\*
  - \* ('21) 스마트팩토리 등 45개 과정 1,095명 → ('22) 디지털콘텐츠 등 51개 과정 1,230명
- **(특성화고 신산업 훈련 강화)** 4차 산업 등 미래유망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고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대상 전문 훈련과정 확대
  - \* ('21) 8개 학과, 8.4억원 → ('22) 40개 학과, 42억원

## ◇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축적 지원

- **(K-Digital Credit 확대)** 코딩·빅데이터 외 메타버스 관련 기술 등 훈련분야 다양화, 심사 유연화 등을 통한 훈련과정 공급 대폭 확대
  - \* ('21) 4만명, 200억원 → ('22) 5.5만명, 275억원
- 대학 학사제도\* 등과 연계하여 대학 3~4학년 참여 본격화
  - \*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(특강 등) 참여실적을 포인트화 → 장학금 지급요건 등으로 활용
- **(K-Digital Platform 확대)** 지역 내 재직자·구직자·지역주민 등의 맞춤형 디지털 융합훈련을 위한 플랫폼을 현행 5개\* → 20개로 확대
  - \* ('21) 대학 4개(한기대, 산기대, 부산대, 광주과학기술원), 공공기관 1개(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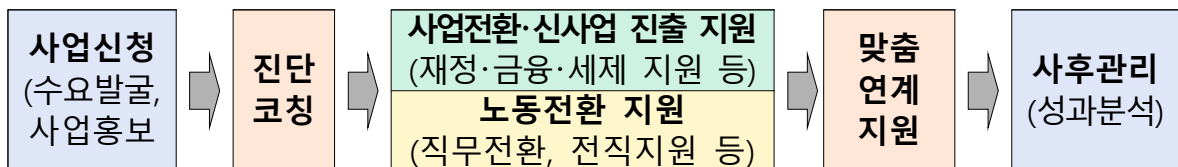
- **(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)** 디지털 융합훈련(온라인) 지원을 확대\*하여 기초과정, 직무능력 향상 과정 등 재직자 수준별 훈련과정 제공
  - \* ('21) 600개 과정, 52억원 → ('22) 1,000개 과정, 188억원
-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(3개소) 등을 활용한 기업맞춤형 현장 집체훈련(S-OJT) 확대('21, 270개소 → '22, 600개소)
- 데이터<sup>1)</sup>, AI<sup>2)</sup>, 클라우드<sup>3)</sup> 등 핵심기술분야 재직자 역량 고도화 지원
  - 1) 데이터 융합 인재양성 '22년 810명, 2) 산업전문인력AI 역량강화사업 '22년 5,600명
  - 3)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: '22년 400명

### ◇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인재양성 지원체계 개편

- **(STEP 활용 확산)** 민간훈련기관의 新 훈련방식 도입 확산을 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(STEP) 고도화<sup>1)</sup> 및 인프라\*지원 확대
  - 1) 프로젝트 기반 훈련을 위한 소규모 과제·토론 지원 시스템, AI 기반 추천시스템 등 추가
  - 2) STEP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규모(누적): ('20년) 60개소 → ('21년) 200개소 → ('22년) 350개소
- 특고 종사자 특화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고, 기초 소양부터 전문 직무훈련 과정까지 비대면 공공 콘텐츠 개발·확산
  - \* 연간 공공 콘텐츠 개발 물량: ('20) 110개 → ('21) 320개 → ('22) 430개
- **(생애 경력관리·활용 강화)**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(훈련참여, 자격취득 등)를 통합 관리·활용할 수 있는 (가칭)직무능력은행제\* 도입 추진(법 개정, '22)
  - \*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·관리체계
-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빅데이터·AI 기반으로 분석·진단하고 훈련·취업을 위한 개인 맞춤형 자격정보\* 제공
  - \* (현행) 시험결과 및 취득점수 제공 → (개선) 개인별 취약항목, 관련 자격·교육·취업정보 등 제공
- **(사업주 훈련 지원방식 개편)** 기존 개별 훈련과정별 지원방식 (과정인정·출결관리 중심)에서 벗어나,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체계 인정 및 총량지원\*을 통해 자율적 훈련 지원('22년 시범사업 추진)
  - \* 과정별 시간당 단가 지원이 아닌, 기업 훈련 총량에 대한 저규제·저지원 방식 도입
- **(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신설)**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'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' 신설('22.2월), 직업능력개발 주요정책 등 심의·조정

## ◇ 사업전환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노동전환 추진

- **(노동전환 지원방안 시행)** 「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(21.7)」에 따라 마련한 5개 부처\*, 41개 사업(1.0조원) 본격 추진
- \* 고용부, 산업부, 중기부, 과기부, 환경부
- 신산업분야로의 직무전환 지원훈련을 대폭 신설·보강하여 시행
    - ▲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(22년 2.5만명) ▲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(22년 15개소) 등
  - 이·전직이 불가피한 노동자의 사전 준비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
    - ▲ 노동전환지원금(22년, 2.3천명) ▲ 워라벨 장려금(22년 1.3만명) 등
  -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고용 위기대응 지원
    - ▲ 지역산업 잠재위기대응 프로젝트(22년 7억) ▲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(22년 691억)
- **(노동전환 지원센터 신설)** 기업 수요 발굴, 진단 코칭, 노동전환 컨설팅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(22년 1,300건)
- 중기부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·산업부(대한상공회의소)와 협업을 통해 사업재편·전환과 노동전환을 연계·지원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
- \* 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통해 발굴된 사업재편·전환 수요기업과 노동전환 연계
- ② 업종분야별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상황에 따라 노사관계지원형(노사협력), 고용서비스지원형으로 유형화하여 컨설팅 → 기업전환 및 노동전환 로드맵 제시
- ③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노동전환 지원정책을 패키지화하여 일괄 지원



- 사업재편·전환 승인기업 명단을 활용하여 노동전환 수요기업 사전발굴, 유관기관과 합동 설명회 개최 등 집중 홍보

## ◇ 효과적인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

- **(사회적 대화)** 경사노委·탄중委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 추진계획 및 역할분담·상호연계 방안 마련('22.上)
  - \* (경사노위) '기후위기 산업·노동전환 연구회'('21.~'22.) 논의 등을 통해 업종별위원회 (석탄발전, 자동차 등) 신설 여부·시기 조율
  - (탄중위) 노동계 참여인원 확대, 노동계 협의체 상설화 등 검토
- 「노동전환 지원법」 제정 시 고용정책심의회 內 노동전환 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, 노동전환 지원방안 의견 수렴 및 이행 상황 점검
- **(노동전환 지원법 제정)**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 지원
  - \* 산업구조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(9.14 발의, 이수진 의원)
- 법 제정시 2030 NDC 상향 등 여건 변화 및 지원방안 신설·보강 등의 내용을 반영한 「제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」 수립('22.下)
  - \* 주기적으로 노동전환이 필요한 산업·업종 등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수립
- **(노동전환 분석센터 신설)** 저탄소·디지털 충격을 반영한 新인력수급 전망 + 위기 기업군 파악 → 기업군별 노동전환 관련 수요전망
  - \* 한국고용정보원 內 산업·직종 전망반<sup>①</sup>, 노동전환 지원반<sup>②</sup> 으로 구성·운영
- 위기기업 공정별 직무분석 및 업무량 변화 분석 + 위기기업 노동자의 전환대상 직종·기업·지역 도출 → 노동전환 지도 시범 구축
  - \* (예시) A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→ A지역 LNG 발전소 + B지역 태양광·풍력 등 발전소 + C지역 조선소 등 이직이 가능한 유사한 직무·지역·기업 등 제시
- **(탄소중립법 이행)** 2050년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충격이 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\*하기 위한 기준 마련(~'22.3)
  - \* 기업·소상공인 지원, 미래유망 신산업 육성, 산업·고용 전환을 위한 행정·금융·세제 등 범부처 지원조치 포괄

## ◇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

- **(특고·플랫폼) 산재보험 DB, 국세청 소득자료와 비교 가입 누락 발굴 및 직권가입, 소득합산제\***(‘22.1월~) 도입 등을 통해 가입확대 추진
  - \*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으로 각 계약이 고용보험 적용 소득기준(80만원)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고 신청 시 계약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
-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(‘22.1~) 전후 집중홍보 실시, 고용보험료 및 플랫폼 보험사무비용 지원을 통해 제도의 조기 안착 추진
  - \* **(고용보험료 지원)**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% 지원
  - \* **(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비용지원)** 사업주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사무 의무를 부담하게 된 노무제공플랫폼에 대해 사무처리비용 지원(‘22년 신규 28억원)
-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은 특고·플랫폼 직종을 선정하여 ‘22.7월 적용 추진
- **(자영업자 적용방안 마련)** 노·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「자영업자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」을 마련(‘22.下)
  - 경사노위 연구회(‘21.9월~) 운영,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논의로 확대\*
    - \*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(‘22.3월) → 적용방안 연구용역 착수(‘22.上) →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논의를 통한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(‘22.下) → 단계적 적용 확대(‘25.)
- **(소득기반 개인별 고용보험 관리체계 구축)** 연구용역 및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적용방안 논의 추진
  - \*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(‘22.上) → 고용보험 제도개선TF 논의(‘22.下)
- **(사회보험료 지원)**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
  - \* (‘21) 0.8조원 → (‘22) 1조원(▲ 상용: 91만명 ▲ 일용: 43만명 ▲ 예술인·특고·플랫폼: 39만명)
- 영세사업장 일용노동자는 이직이 잦은 직종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\*(지원대상 +43만명)
  - \* (현행) ‘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 있는 경우 미지원 → (개선) ‘6개월 이내로 완화

## ◇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

\*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·인원: ('21) 1.2조원, 59만명 → ('22) 1.5조원, 60만명

- **(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)**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이내로 수급 후 취·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인센티브(50만원 1회) 지급
- **(취업알선 기능 강화)**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'집중 취업알선 기간'으로 운영 + 취업알선 전담팀\* 시범센터(인천·구미) 운영  
\*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고용센터 전담팀이 수행 및 참여자 통합관리
- **(구직자 특성별 취업지원 강화)** 취업역량평가(초기상담 시 실시) 전면 개편\*을 통해 구직자 특성별 지원 강화  
\* 구직의지, 장애요인, 역량 등 항목 재구성+개인특성 지표 추가→상담사 활용가이드 제작보급  
· 低역량 구직자: 구직기술 향상 의무화, 직업훈련 또는 일경험 제공  
· 高역량 구직자: 면접클리닉, 취업알선 우선 제공 등
- **(일경험 지원 강화)** 일경험 프로그램('22년 2.5만명)을 통해 직무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, 참여자 과제부여 등 밀착 관리
  - 대기업 참여 훈련연계형('21.11월~) 우수사례 확산 및 참여기업 지속 발굴
- **(기본계획 마련)**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해 「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」 수립·발표

## ◇ 취약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

- **(비정규직 노동자)**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을 확대 추진\*하고,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고용구조 진단·개선 컨설팅 제공  
\* '21년 430개소 → 코로나19 상황 고려,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
- 고용형태 공시제를 개편하여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\*  
\* ('21) 1,000인 이상 사업주만 적용 → ('22) 공시대상 300인 이상 전체로 확대

- **(플랫폼종사자)** 플랫폼종사자 보호 입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간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, 일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적 권익 보호

**<플랫폼종사자 보호 4법>**

- ▶ **(플랫폼종사자보호법<제정>)** 계약 공정성 확보 및 종사자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기업 및 소속업체의 책임 및 의무 규정
- ▶ **(직업안정법)**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운영정보 신고의무 부과, 노무제공자 등에게 이용약관·이행조건을 제공하고 노무대가·수수료를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 등
- ▶ **(고용정책기본법)**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수집·제공, 능력개발, 고용안정 등 국가·지자체 정책추진 근거 마련
- ▶ **(근로복지기본법)** 플랫폼종사자 대상 국가·지자체 근로복지사업 지원근거 마련

- 근로자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형태 자문기구\* 운영

\* 판단사항: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형태 판단(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), 플랫폼법 적용 시 쟁점 판단(종사자의 정보제공 요청 시 기업 거부의 적정성 판단 등)

- 이동노동자 휴게시설 확충 및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

\* 이동노동자 휴게시설 설치·운영 근거 마련(근로복지기본법 개정, '22.2.18. 시행), 플랫폼 기업 대상 종사자 휴게시설 등 일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50% 지원

-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 등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\* 폐지 추진

\* 現 산재보험법상 '주로 하나의 사업'에 노무를 제공할 것을 적용요건으로 명시

- **(가사노동자)** 업무매뉴얼\* 발간, 고용정책심의회 內 가사근로자 전문위원회 신설('22.4~) 등을 통해 가사근로자법('22.6 시행) 안착 추진

\* 가사근로자법 해설, 표준계약서(이용계약서 등), 가사근로자 인사·노무관리 방안, 등

- 사회보험료 지원\*, 컨설팅('22년 100개소), 인증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직접 고용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

\*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·고용보험료 80% 지원(5천명)

- **(건설노동자)**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「건설근로자법(고용부)」, 「건설산업기본법(국토부)」 개정 추진(~'22), 전자카드제 확산\* 및 현장안착 추진

\* ('20.11~) 공공 100억, 민간 300억 이상 공사 → ('22.7~) 공공 50억,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

- 연구용역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과 연계한 훈련체계 구축



### ◇ 맞춤형 구직자 취업지원 및 기업 채용지원 서비스 강화

- **(구직자) 심층 진입상담\***을 통해 특성에 따라 '준비된 구직자' 및 '준비가 필요한 구직자'로 분류하여 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\* 센터방문 구직자, 온라인 구직등록자 중 조기취업 희망자 등 대상으로 취업의욕·역량, 취업애로요인 등 취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·관리

#### < 구직자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(안) >

유형	특성	취업지원서비스
준비된 구직자	▲취업분야결정 <u>完</u> ▲취업가능성 <u>上</u>	• 워크넷 정보제공 및 집중 취업알선
	▲지역이동 <u>可</u>	- 광역단위 일자리 알선
	▲지역이동 <u>不可</u>	- 지역 내 적합 일자리 위주 알선
↑ ↑ 취업의욕·능력 제고를 통해 준비된 구직자로 전환하여 지원 ↑ ↑		
준비가 필요한 구직자	▲취업분야결정 <u>未完</u> ▲취업가능성 <u>下</u>	• 취업의욕·능력 제고 등 취업준비 후 알선
	▲취업의욕 <u>下</u> ▲취업능력 <u>中</u>	- 심층상담, 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 등 지원
	▲취업의욕 <u>中</u> ▲취업능력 <u>下</u>	- 훈련 및 일경험 등 취업역량 제고 지원
	▲취업의욕능력 <u>下</u> ▲경제적 여건 <u>下</u>	-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취업애로요인 해소 지원

☞ **코로나19로 인한 고용센터 업무 상황 등을 고려, 적정 시점 시행 추진**

- **(특고 취업지원)** 특고 직종별 수요·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\*하여 특고 취업지원서비스 추진('22~)

\* 특고 종사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(~'21.12월)를 토대로 마련(~'22.上)

- 서비스 지원 요구가 많고 규모가 큰 1~2개 업종(방과후강사, 학습지 교사 등)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, 성과 등을 토대로 단계적 확대

- **(지역·업종별 취업지원 활성화)** 전문가 컨설팅,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전문성 축적을 지원하는 업종별 취업지원 네트워크 운영 확대\*

\* ('21) 관광숙박, 여행 등 6개 업종 네트워크 구성 → ('22) 대상 업종 추가

- 현재 지역 단위로 개최하고 있는 구인·구직 만남의 날, 채용박람회 등 채용 행사를 업종별로 개최하여 서비스 활성화 유도

\* (현행) 고용센터에서 관할지역의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구직자 매칭 → (개선)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광역단위로 업종(자동차 등)과 관련한 구인기업 정보를 발굴하고, 이에 맞는 구직자를 매칭할 수 있도록 다수의 고용센터가 참여

- **(맞춤형 기업 채용지원 서비스\* 확대)** 구인기업의 근로여건, 인지도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

\* '21.7월부터 18개 센터에서 시범서비스 운영 중 → '22년부터 평가를 통해 쏠센터 확대 추진

-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기업 등은 고용여건 향상, 채용, 인력양성까지 종합 지원하는 「기업채용지원패키지」 제공

< 구인기업 유형별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(안) >

개입 정도	유형	구인 일자리 특성	채용지원서비스	
			1단계(채용공고)	2단계(구인애로)
	온라인 알림형	▲ 일자리에 상관없이 근로조건 동일·유사 ⇒ <u>요양보호기관(돌봄서비스직 등), 경비·청소용역업체 등</u>	<b>자율매칭</b> [자동알림서비스] * 알림톡, 푸쉬알림	<b>채용지원</b> [구직자 알선]
	인재 지원형	▲ 임금中 ▲ 복지中 ▲ 인지도中 ⇒ <u>연구기관, IT업체(전문기술직 등)</u>	<b>자율매칭</b> [AI 일자리 추천] * 직무능력 중심	<b>적극개입</b> [구직자 발굴] [눈높이 조절]
	대규모 채용형	▲ 임금上 ▲ 복지 <sup>上</sup> ▲ 인지도 <sup>上</sup> ⇒ <u>대기업·협력업체 수시채용(생산·기능직 등)</u>	<b>집중 채용지원</b> [채용대행·행사]	
	인지도 확산형	▲ 임금中 ▲ 복지中 ▲ 인지도 <sup>中下</sup> ⇒ <u>강소기업, 혁신형 중소기업 등</u>	<b>집중 채용지원</b> [구직자 알선] [채용대행·행사]	<b>적극개입</b> [눈높이 조절] [근로조건 조정·협상]
	고용여건 개선형	▲ 임금 <sup>下</sup> ▲ 복지 <sup>下</sup> ▲ 인지도 <sup>下</sup> ⇒ <u>30인 미만 소규모 영세기업 등</u>	<b>고용여건향상 종합 지원</b> [기업채용지원패키지 제공]	

◇ **데이터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**

- **(디지털 고용서비스)** 잡케어 시스템을 통해 이력서 상 직무역량을 AI로 분석하여 고용센터 상담원이 직업·취업 상담에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\*

\* ①고객정보(직무수준, 심리검사를 통해 직무 수준별 경력개발경로 등 제공)  
 ②시장정보(직종별 일자리 수요, 임금, 자격, 훈련, 학력 등 관련 정보 제공)  
 ③추천정보(직종별 직업훈련, 자격증, 채용 추천정보 제공)

- **(정보 연계)** 행안부 등 타 기관과 정보연계\*를 통해 고용서비스 신청 시 문서 자동첨부를 통한 첨부서류 간소화로 신청 편의 제고

\* 사업자등록정보, 4대보험 가입정보, 주민등록정보, 외국인 거소내역 정보 등

- **(고용24 시스템 구축)** 취업알선, 훈련상담, 실업급여, 고용지원금 등 개별 전산망의 민원신청·처리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(~'23)

## ◇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

### □ (선정심사 강화) 공통 심사 - 사업별 심사의 2단계 절차 마련

< 민간위탁기관 선정 절차(안) >

1단계: 공통 심사 <한고원> (기본점수 이상 시 통과, 4~11월)		2단계: 사업별 심사 <고용센터> (예산 등 사업 특수성 반영 등, 12~3월)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기관 경영과 리더십</li> <li>▸ 전문성(정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실적)</li> <li>▸ 종사자 교육 참여회수, 교육계획 등</li> <li>▸ 유관기관 협력, 고객만족도 등</li> </ul>	⇒	<b>국민취업 지원제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사업추진방안</li> <li>▸ 구인처 보유현황</li> <li>▸ 취업구직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등</li> </ul>
	<b>청년 내일채움공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사업 내용 및 홍보의 적정성</li> <li>▸ 자체 알선망 등</li> </ul>	

### □ (컨설팅)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\*

- \* ①(입문컨설팅) 위탁사업 참여희망기관 책임자 등 대상으로 사업개요, 신청법 등 소개  
 ②(조직컨설팅) 참여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, 상담기술 등 역량 강화 지원  
 ③(기관컨설팅) 참여기관 책임자 대상으로 리더십, 자원관리, 중장기 계획 등 컨설팅

## IV. 고용정책 과제 이행 점검 및 보완

### □ (추진상황 점검) 고용정책심의회 및 경제중대본 內 고용위기대응반, 일자리정책 TF 등을 통해 고용부 및 관계부처의 고용정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\*

\* ①주요 일자리사업 집행점검: 월 1회, ②전반적인 고용정책 추진현황 점검: 분기 1회

- 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(EPAS)을 통해 대상별·지역별로 분석하고, 전체 일자리사업의 총괄적 성과 분석 추진
-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교육 분야까지 확대, 고용영향평가 협의회(고용부·기재부·과기부)를 통해 예산 연계 강화

### □ (정책과제 보완) 코로나19 추가 확산 등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일자리 과제 보완

정책과제	부처 · 기관
<b>(1)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규제혁신·창업 지원 등 민간 투자 분위기 조성</li> <li>· 미래유망 산업·일자리 집중 육성</li> </ul>	<p>전 부처</p> <p>전 부처</p>
<b>(2) 취약부문 일자리 회복 지원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·산업 중심의 고용회복 지속 지원</li> <li>·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기회 확대</li> <li>·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촉진 및 지원강화</li> <li>-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재취업 지원 강화</li> <li>- 일·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한 여성 고용촉진</li> <li>-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·예산 지원 강화</li> </ul> </li> </ul>	<p>고용부, 산업부</p> <p>고용부, 행안부, 복지부</p> <p>고용부, 행안부, 국조실</p> <p>고용부</p> <p>고용부, 여가부</p> <p>고용부</p>
<b>(3) 미래유망산업의 인재 양성 강화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디지털·신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</li> <li>·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축적 지원</li> <li>·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인재양성 지원체계 개편</li> </ul>	<p>고용부, 과기부, 교육부</p> <p>고용부, 과기부</p> <p>고용부</p>
<b>(4)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추진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전환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노동전환 추진</li> <li>· 효과적인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</li> </ul>	<p>고용부, 중기부, 산업부 과기부, 환경부</p> <p>고용부, 산업부, 탄중위</p>
<b>(5)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 구축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</li> <li>·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</li> <li>· 취약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</li> </ul>	<p>고용부</p> <p>고용부</p> <p>고용부</p>
<b>(6) 고용안전망 확충에 발 맞춘 고용서비스 내실화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맞춤형 구직자 취업지원 및 기업 채용지원 서비스 강화</li> <li>· 데이터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</li> <li>·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</li> </ul>	<p>고용부</p> <p>고용부</p> <p>고용부</p>

**붙임 2**

**‘22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**

□ ‘22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31조 1,331억원(전년 대비 9,895억원 증가)

-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, 산업구조변화 대응,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

<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(본예산 기준, 억원, %)>

구 분	‘18년	‘19년	‘20년	‘21년	‘22년
일자리사업 예산	180,181	212,374	254,998	301,436	311,331
전년대비 증가율	(13.0)	(17.9)	(20.1)	(18.2)	(3.3)
총지출 대비 일자리사업 예산	4.2 [428.5조]	4.5 [470.5조]	5.0 [512.3조]	5.4 [558.0조]	5.1 [607.7조]

\* ‘21년 예산은 ‘22년 폐지·제외된 사업을 제외하여 산정한 규모임

□ 유형별로는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, 신기술·신산업 분야 중심의 직업훈련,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등이 크게 증가

<‘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유형별 규모(억원, 천명)>

유 형	‘21년(본예산)(A)	‘22년(B)	증감(B-A)	증가율
<b>【일자리사업 총괄】</b>	<b>301,436</b>	311,331	<b>+9,895</b>	3.3%
1. 직업훈련	23,340	25,303	<b>+1,963</b>	8.4%
2. 고용서비스	17,000	20,044	<b>+3,044</b>	17.9%
3. 고용장려금	80,935	77,731	<b>△3,204</b>	△4.0%
4. 창업지원	24,176	28,091	<b>+3,915</b>	16.2%
5. 직접일자리	30,894	33,200	<b>+2,306</b>	<b>7.5%</b>
(인원)	1,007	1,056	<b>+49</b>	
6.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	125,090	126,933	<b>+1,843</b>	1.5%